

외국인 입시관리 규정

제 1 장 목 적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성결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의 설립목적과 교육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외국인신입생을 선발함에 있어 제반규정과 입시사정 방침을 준수하여 공정한 심사를 거쳐 신입생을 선발하는 데 있다.

제 2 장 외국인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

제2조 (외국인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) ① 외국인 대학입학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에 외국인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(이하 ‘외국인입학전형위’ 라한다)를 둔다.

② 외국인입학전형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외국인신입생 선발 사정에 관한 사항
2. 외국인입시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

3. 외국인입학전형위 심의를 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외국인입학전형위는 입학교류처장, 해당 단과대학장으로 구성한다. 위원회의 주관부서는 국제교류과로 하며, 주무 부서장은 입학교류처장으로 한다.

④ 외국인입학전형위의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며, 위원회의 위원을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.

⑤ 위원장 유고시에는 입학교류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⑥ 외국인입학전형위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1/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3 장 외국인대학입학공정관리대책위원회

제3조 (외국인대학입학공정관리대책위원회) ① 외국인 대학입학 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외국인대학입학공정관리대책위원회(이하 ‘외국인공정위’라 한다)를 둔다.

② 외국인공정위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, 위원장 1인을 포함 교수로 4명의 위원을 총장이 임명한다.

외국인 입시관리 규정(6-32-1)

③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하며, 회의록은 위원장을 포함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한다.

제4조 (기능) 외국인공정위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.

1. 외국인신입생 선발 사정과 관리업무의 공정성 여부 검토
2. 외국인입시 예산의 적정 활용에 관한 사항
3.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에는 총장에게 보고

제5조 (운영세칙)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정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2조)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2조)은 2018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.